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8.

기획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달서구청장(기획전략과장)
- 발의일자: 2025. 11. 14.(금)
- 회부일자: 2025. 11. 14.(금)
- 상정 및 의결: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재경위원회(2025. 12. 8.)

2. 개정이유

- 달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와 區 주요 현안사업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행정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여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조직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국” 신설 및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신 설: 경제환경국
 - 명칭변경
 - 기획경제국 → 기획전략국
 - 복지증진국 → 복지국
 - 문화환경국 → 문화교통국
- “과” 의 신설 및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 신 설: 미래전략과(기획전략국), 가족정책과(복지국)

- 명칭변경
 - 기획전략과 → 기획예산과
 - 일자리지원과 → 일자리청년과
 - 청소과 → 자원순환과
 - 아동가족과 → 아동친화과
 - 행복나눔과 → 행복돌봄과

- 이 관
 - 일자리청년과, 경제지원과(舊 기획경제국 → 경제환경국)
 - 자원순환과, 기후환경과(舊 문화환경국 → 경제환경국)
 - 위생과(舊 복지증진국 → 경제환경국)

○ 분장사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 신설: “돌봄 통합지원” 업무(행복돌봄과)

- 이 관
 - “성과평가” 업무(청렴감사실 → 기획예산과)
 - “국제교류 및 외국인 주민지원·의회협력” 업무(총무과 → 기획예산과)
 - “정책개발 및 미래전략 수립·인구정책·지속가능발전·기후변화 대응·규제개혁·정부혁신” 업무(舊 기획전략과 → 미래전략과)
 - “여성가족친화·결혼장려·출산장려” 업무(舊 아동가족과 → 가족정책과)
 - “주거복지” 업무(舊 행복나눔과 → 가족정책과)

○ 그 밖에 분장사무 문구 정비(명시화 등)

- 조사 및 환경순찰(청렴감사실), 경관디자인(도시디자인과), 정원(공원녹지과), 정신건강·질병관리(보건행정과) 등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등(안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비용추계서: 비해당
- 입법예고(2025. 10. 13. ~ 11. 3.) 결과: 의견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과 신설 등 행정기구 및 사무를 조정함으로써 구 본청 직제를 개편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
 - 구 본청 직제를 기존 ‘5국 1실 28과 139팀’ 에서 ‘6국 1실 30과 140팀’ 으로 개편하는 것이며, 조정 내역은 경제환경국 신설, 미래전략과, 가족정책과 등 2개 과 신설, 조사팀, 규제혁신팀, 돌봄정책팀, 돌봄사업팀 등 4개 팀 신설, 2개팀을 1개팀으로 통합한 나눔봉사팀과 별빛캠프팀, 폐지되는 대외협력팀을 포함하고 있음.
 - 안 제6조는 기획경제국을 기획전략국으로 변경하여 기획예산과·미래전략과·디지털정보과 및 홍보미디어과를 두고, 15개 팀의 분장사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의2는 행정교육국에 총무과·종합민원과·회계과·세무과·징수과 및 평생교육과를 두고, 32개 팀의 분장사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는 경제환경국을 신설하여 일자리청년과·경제지원과·자원순환과·기후환경과 및 위생과를 두고, 21개 팀의 분장사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7조의2는 복지증진국을 복지국으로 변경하여 복지정책과·어르신장애인과·가족정책과·아동친화과 및 행복돌봄과를 두고, 22개 팀의 분장사무를 명시하였고,

- 안 제7조의3은 문화환경국을 문화교통국으로 변경하여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교통행정과 및 주차관리과를 두고, 14개 팀의 분장사무를 명시하였음.

◇ 행정기구 조직개편 개요: 국(+1), 과(+2), 팀(+1)

구분	구분청	보건소	동	의회사무국
기존	5국 1실 28과 139팀	1소 2과 1지소 13팀	23동 53팀	1국 4전문위원 4팀
개편	6국 1실 30과 140팀	-	-	-

◇ 행정기구 조직개편 세부내용

국명	부서명	비고
청렴감사실	조사팀(신설)	1실 3팀
기획전략국 (←기획경제국 명칭변경)	기획예산과(←기획전략과 명칭변경, 5팀→4팀) 미래전략과(신설, 규제혁신팀 분리 신설, 3팀), 디지털정보과(5팀), 홍보미디어과(3팀)	5과 21팀 → 4과 15팀
행정교육국	총무과(5팀→4팀), 종합민원과(4팀), 회계과(3팀), 세무과(7팀), 징수과(5팀), 평생교육과(9팀)	6과 33팀 → 6과 32팀
경제환경국 (신설)	일자리창년과(←일자리지원과 명칭변경, 기획경제국에서 이관, 4팀), 경제지원과(←기획경제국에서 이관, 4팀), 자원순환과(←청소과 명칭변경, 문화환경국에서 이관, 3팀), 기후환경과(←문화환경국에서 이관, 5팀), 위생과(←복지증진국에서 이관, 5팀)	5과 21팀
복지국 (←복지증진국 명칭변경)	복지정책과(6팀), 어르신장애인과(4팀), 가족정책과(←아동가족과에서 분리 신설, 4팀), 아동친화과(←아동가족과 명칭변경, 7팀→4팀), 행복돌봄과(←행복나눔과 명칭변경, 돌봄정책팀, 돌봄사업팀 신설 4팀)	5과 26팀 → 5과 22팀
문화교통국 (←문화환경국 명칭변경)	문화관광과(5팀→4팀), 체육청소년과(3팀), 교통행정과(4팀), 주차관리과(3팀)	6과 23팀 → 4과 14팀
도시창조국	도시디자인과(6팀), 공원녹지과(5팀), 안전도시과(5팀), 건설과(5팀), 건축과(7팀), 토지정보과(5팀)	6과 33팀

-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에 행정기구의 설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2024년 3월 29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인구 규모별 실·국의 설치기준이 폐지됨으로써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라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있으면 국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위배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번 행정기구 개편은 국·부서의 신설·명칭 변경, 연계성을 고려한 업무 재배치 등 행정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전문화·세분화 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만, 조직 개편에 따른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7조의2제2항제3호 중 “출산장려”를 “출산지원”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7조의2(복지증진국) ① <u>복지증진국에 복지정책과 ·</u> <u>어르신장애인과 ·</u> <u>아동가족과 · 행복나눔과</u> <u>및 위생과를 둔다.</u></p> <p>② <u>복지증진국장은 다음</u> <u>사항을 분장한다.</u></p> <p>1. <u>복지정책 · 기초생활보</u> <u>장 · 통합조사관리 등</u> <u>에 관한 사항</u></p> <p>2. <u>노인정책 · 노인시설</u> <u>· 장애인복지 · 자립지</u> <u>원 등에 관한 사항</u></p> <p>3. <u>여성가족친화 · 아동친</u> <u>화 · 출산장려 · 아동보</u> <u>호 및 아동학대사건조</u> <u>사 · 결혼장려 · 보육 ·</u> <u>드림스타트 등에 관한</u> <u>사항</u></p> <p>4. <u>나눔협력 · 자원봉사</u> <u>· 희망이음 · 현장복지</u> <u>서비스 · 주거복지 등</u> <u>에 관한 사항</u></p> <p>5. <u>공중위생 · 식품안전</u> <u>· 음식문화개선 · 위생</u> <u>지도 · 영상물관리 등</u> <u>에 관한 사항</u></p>	<p>제7조의2(복지국) ① <u>복</u> <u>지국에 복지정책과 ·</u> <u>어르신장애인과 · 가족</u> <u>정책과 · 아동친화과</u> <u>및 행복돌봄과를 둔다.</u></p> <p>② <u>복지국장은 다음 사</u> <u>항을 분장한다.</u></p> <p>1. <u>복지정책 · 기초생활보</u> <u>장 · 통합조사관리 등에</u> <u>관한 사항</u></p> <p>2. <u>노인정책 · 노인시설 ·</u> <u>장애인복지 · 자립지원</u> <u>등에 관한 사항</u></p> <p>3. <u>여성가족친화 · 결</u> <u>혼장려 · 출산장려 ·</u> <u>주거복지 등에 관한</u> <u>사항</u></p> <p>4. <u>아동친화 · 아동보호</u> <u>및 아동학대사건조사</u> <u>· 보육 · 드림스타트</u> <u>등에 관한 사항</u></p> <p>5. <u>돌봄 통합지원 · 희</u> <u>망이음 · 후원 및 자</u> <u>원봉사 등에 관한 사</u> <u>항</u></p>	<p>제7조의2(복지국)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1. (개정안과 같음)</p> <p>2. (개정안과 같음)</p> <p>3. ----- -----출산지원----- -----</p> <p>4. (개정안과 같음)</p> <p>5. (개정안과 같음)</p>